

(問) 保險金額과 保險價額에 대하여 具體的으로 說明하여 주십시오.

(答) 損害保險에 있어서는 損害가 發生한때 保險者가 그 補償할 金額의 最高限度로서 當事者間에 約定된 金額을 말한다. 保險金額은 保險期間을 通算하여 保險者가 補償할 金額의 限度를 意味하는 경우와 1회의 保險事故에 대한 保險者가 補償할 金額의 限度를 의미하는 두가지 경우가 있다.

付保金額은 保險價額과 一致하는 것이 常態이나 때로는 保險價額을 넘는 수가 있고, 反對로 未達될 때가 있다.

保險價額의 全部를 保險에 부친 경우를 全部保險 또는 全額保險이라고 한다.

保險金額이 保險價額을 超過할때는 超過保險이 되고 未達된때는 一部保險이 된다. 超過保險의 超過분에 대하여는 商法에서 無效를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商法에서는 保險者의 負擔은 付保金額과 保險價額에 對한 比率에 의하여 定해짐을 規定하고 있다.

付保金額은 無制限 定해지는 것이 아니고 普通 保險事故의 發生으로 因하여 發生할 수 있다고 豫想되는 損害額, 即 保險價額을 超過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定해지는 것이 原則이다. 付保金額은 保險事故가 發生하였을 때에 保險者가 支給하여야 할 金額 그 自體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 支給할 金額은 實際로 發生한 損害額의 範圍內에서 損害額에 따라 約定된 付保金額과 保險價額의 比率에 의하여 定해지는

것이다.

生命保險契約에 있어서는 法律및 保險約款에 의하여 定해진 保險事故가 發生한 경우에 支給될 一定한 約定의 金額을 保險金額이라고 한다. 그 金額은 保險者와 保險契約者와의 合意에 의하여 定해진다. 商法은 約定할 保險金額에 대하여 制限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事業方法書에는 被保險者 1인에 대한 契約可能한 保險金額의 最高限度를 定하고 있다. 그러나 事業方法書란 保險會社가 따를 準則에 지나지 않

相 談 코 너

保 險 相 談

으므로 그 規定에 違反해도 保險契約自體에는 아무런 關係가 없다. 그러므로 萬若 잘못해서 事業方法書에 定해진 保險金 最高制限額을 넘어서 保險契約이 締結되었다 하여도 그 契約自體는 有效하다.

損害保險契約에 있어서는 保險價額이란 被保險利益 即 保險契約의 目的의 評價額을 말한다. 다시 말하여 保險事故의 發生에 의하여 被保險者가 받을 可能性이 있을수 있는 不利益의 限度額을 意味한다. 保險에 의한 利得禁止의 原則에 의하여 被保險者는 保險에 의하여 不當利得을 가져서는 안되므로 保險

價額은 그 被保險利益에 관하여 付保할 수 있는 保險金額의 法律上의 限度를 表示하는 것이다. 그래서 當事者가 約定하는 保險金額은 그 保險價額을 超過해서는 안된다. 保險價額의 評價는 社會通念에 의한 客觀的 判斷을 基準으로 할 것이나 問題가 된 時期에 있어서의 客觀的 價額을 事後에 評價한다는 것은 實際上容易한 일은 아니며 紛爭을 일으킬 우려가 많으므로 商法은 當事者間에 있어서 保險價額을 協定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協定保險價額) 일단 協定을 하면 이것이 客觀的 判斷에 의한 保險價額과 一致하던 안하던 不問하고 當事者들은 이 保險價額에 拘束되며 한편 特別히 過大한 差異가 保險金額과 保險價額 사이에 있음을 保險者가 證明한 경우에 限하여 客觀的 判斷에 의하여 評價된 保險價額에 의하는 것으로 規定하고 있다.

當事者間에 協定된 保險價額을 協定保險價額이라 하며 協定保險價額을 定한 保險金額을 既評價保險이라하며 協定保險價額을 定하지 않은 契約을 未價評價保險이라 한다.

따라서 保險金額과 保險價額을 잘못 理解하므로서 混屯할 우려가 많으므로 保險契約을 締結할 경우나 罹災를 當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러한 點을 留意하시어 明確하게 알아두는 것이 契約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金 權 直
〈業務部長〉